

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[별지 제27호서식]

[] 동물전시업
[] 동물위탁관리업
[] 동물미용업
[] 동물운송업

등록증 재발급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발급일	처리기간	즉시
신청인	성명(법인명)	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대표자 성명	
	주소 (전화번호:)			
영업장	명칭(상호)			
	주소	(전화번호:)		
	신청업종	[] 동물전시업 [] 동물위탁관리업 [] 동물미용업(일반, 자동차 이용) [] 동물운송업		
재발급 사유				
등록증 분실사유	※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			

「동물보호법」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[] 동물전시업 [] 동물위탁관리업 [] 동물미용업 [] 동물운송업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등록증(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)	수수료 5천원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

처리절차

신청서
작성

신청인

→

접 수

특별자치시장·특별
자치도지사·시장
·군수·구청장

→

서류 검토

특별자치시장·특별
자치도지사·시장
·군수·구청장

→

결제

특별자치시장·특별
자치도지사·시장
·군수·구청장

→

등록증
재발급

특별자치시장·특별
자치도지사·시장
·군수·구청장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